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27 선고 2019가합3467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낙일

피고재단법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
담당변호사 전승환

변론 종결2020. 6. 4.

판결 선고2020. 8. 2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8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1) 원고는 2017. 6. 26. C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720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720 지분 및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69분의 121 지분(이하 위 각 C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'이 사건 C 지분'이라 한다)을 합계 10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2017. 6. 27. 이 사건 C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2) 원고는 2017. 8. 17. D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2189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2189 지분 및 ③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269분의 148 지분(이하 위 각 D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'이 사건 D 지분'이라 한다)을 합계 20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2017. 8. 28. 이 사건 D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3) 원고는 2017. 8. 7. E으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.32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.32 지분(이하 위 각 E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'이 사건 E 지분'이라 한다)을 합계 10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2017. 9. 11. 이 사건 E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4) 원고는 2017. 9. 11. F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519.725 지분(이하 '이 사건 F 지분'이라 한다)을 20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2017. 9. 25. 이 사건 F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5) 원고는 2017. 9. 21. G로부터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 지분과 ②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5500분의 1322 지분(이하 위 각 G 명의의 부동산 지분을 '이 사건 G 지분'이라 하고, 이 사건 C, D, E, F, G 지분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지분'이라 한다)을 합계 200,000,000원에 매수하였고, 2017. 9. 25. 이 사건 G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1) 피고는 2013. 7. 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617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한 피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처분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, 따라서 이에 기하여 마쳐진 H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며, 이에 터 잡은 C, D, E, F, G 등(이하 'C 등'이라 한다) 명의의 지분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C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.

2) 위 법원은 2015. 2. 11.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

선고하였고,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10907호로 항소하였다.

3) 항소심 법원은 그 후 피고의 대표권 있는 이사 직무대행자 등에 의하여 대표권 없는 자들의 소송행위가 추인되어 그 하자가 모두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.

4) 환송 후 제1심(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7229호)은 2017. 5. 24.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H 사이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처분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, 이에 기하여 H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C 등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각 지분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C 등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. 피고와 C 등 사이의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요지

원고는 공익재단인 피고의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지분을 C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피고가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각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. 이로 인하여 원고는 C 등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각 지분 매매대금 합계액인 8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피고가 C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지분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고,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. 그러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구상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구체적인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·증명이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김상훈

판사이준현

판사백상빈

별지